

2026년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기업지원 프로그램(고용창출) 수혜기업 모집 공고

경상북도와 포항시, (재)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* 6대 유망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·성장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용 창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2026년 7월 20일
(재)포항테크노파크 원장

* 그린바이오 산업 :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 기술 등을 적용, 농업 및 전·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

1. 사업개요

□ 사업 목적

- 그린바이오 산업 6대* 유망분야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보육을 통한 성장 도모
 - * 6대 유망분야 : 동물용의약품, 미생물, 식품(대체식품), 천연물 소재, 곤충, 종자 등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에 제시된 분야
- 경북·포항지역의 그린바이오 산업 전문인력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

<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방법 >

가.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

☞ 한국농업기술진흥원(www.koat.or.kr) ▶ 팝업/배너/공지사항 확인 ▶ 신고 구비서류 준비
▶ 그린바이오기업 신고

나. 신고접수 후 30일 이내, 신고수리 여부를 이메일로 통지

< 그린바이오기업 신고 첨부서류 >

가. 기업 신고서(직인 날인) ☞ 정관(법인)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규정(개인사업자)

나. 기업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☞ 재무제표 등 경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다. 사업자등록증(주민등록번호 제외된 서류) 및 등기사항증명서(법인만 해당)

□ 지원 대상 및 내용

구 분	세부 내용
지원 대상	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근거하여,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가 제출 완료된 중소벤처기업(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) - 주 사업장(사업자등록증)이 경북·포항지역이며, 그린바이오 산업 기업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(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까지 포함) (*채용자는 경북·포항 거주 필수)
지원 조건	4대보험 가입 기업으로 소정근로시간(주15시간, 월60시간) 이상 근무 하여야 하며,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액 이상으로 신규채용한 인원 - 본 사업 종료 후, 3개월 이상 고용 유지
지원 범위	- 기업당 최대 800만원(단,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가능) - 지원 기간 : 2026년 9월 ~ 2026년 12월 -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 지급 - 기본급 외 각종 수당(상여 포함) 및 4대보험, 세금 등 기업·본인부담금 제외 - 사업비 소진 시까지
지급 방법	- 사업 기간 종료 전, 지원금 지급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- 서류 검토 및 고용 확인 후, 사업주에 일괄 지급
선정 방법	서류 평가
지원 제외	고용노동부 등 타고용보조금과 중복지원자(타 정부사업 현금, 현물포함) - 사업주, 사업주의 배우자·직계존비속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4대 보험 미가입자 및 타지역 거주/근무자(2주 이내 교육/출장 등 예외) -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/월 미만인 근로자(15시간/주 미만 포함)
유의 사항	- 지원금은 신규 채용자에만 해당이 되며, 기존 인력은 지원 해당 없음 - 해당 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, 해당 근로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 감독예정 -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, 즉시 사업 취소 예정 - 허위 고용 등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 예정

□ 신청 제한

- 기업이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 신청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-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인 경우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'규제'중인 경우 - 국세,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- 동일 과제를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경우 -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및 포항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-

2.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 · 접수 기간 : 상시모집(2026.7.20. ~)

□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
- (재)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ptp.or.kr) 사업공고에서 사업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사업신청 등록

※ 신청 마감 후,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 및 반환 불가.

- 문 의 처 : (재)포항테크노파크 바이오사업본부 그린바이오산업팀
박동규 선임연구원, 054-262-4215, kei@ptp.or.kr

□ 제출 서류(필수)

구 분	세부 내용
사업 신청시 (붙임1.)	• 사업 신청서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• 중복지원 금지 약약서 • 사업자등록증 •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원 • 기업 재무제표(최근 3개년) • 연도말 기준, 고용보험가입자명부(최근 3개년) •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서
고용 완료시	• 근로계약서 사본(주민등록 뒷자리 삭제)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• 고용 근로자 신분증 사본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) • 4대보험 가입증명서
지원금 신청시 (붙임2.)	•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• 고용 유지 약약서 • 기업 통장 사본 • 급여지급 내역서(기업 및 근로자 모두 해당) • 4대보험 가입자명부, 4대보험 완납증명서 •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

※ 필수서류 미제출 시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
※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준수하며, 변경 및 임의 양식사용 불가

※ 신규고용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전 고용자까지 신규고용으로 인정함. 단, 지원금은 (재)포항테크노파크에서 발송한 선정 공문을 수령한 날부터 계상/지급 가능함

※ 사업기간 內(26년 8월~12월) 동안 고용이 유지된 기업에 한하여 인정

※ 26년 12월, 급여 지급내역서는 고용 유지 약약서로 대체(향후, 인건비 지급서류 제출)

3. 선정 및 추진 절차

□ 평가 및 선정 절차

사업공고 및 접수	- 수혜기업 모집공고 시행 -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접수	포항TP	상시모집 (~26년말)
수혜기업 서류검토	- 신청서류 기반, 자격요건 등 사전 검토 - 수혜기업 선정 및 TP지원금 확정	포항TP	상시
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	선정 결과 통보(공문)	포항TP ⇔ 수혜기업	상시
신규고용 및 점검	- 수혜기업 : 신규고용 및 고용통보서 제출 - 포항TP : 수혜기업 모니터링 및 점검	포항TP ⇔ 수혜기업	상시
지원금 신청 및 결과보고	- 수혜기업 :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- 포항TP : 지원금 교부 및 사업비 정산	수혜기업	12월
사후관리	- 수혜기업 고용 및 매출 등 성과조사 및 모니터링 - 후속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	포항TP ⇔ 수혜기업	12월~
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.

4. 의무 사항

□ 수혜기업의 의무

- 선정기업은 협약 이후,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
-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명시된 목표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선정기업은 (재)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
- 선정기업은 (재)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및 수시 점검 (현장 점검 등),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 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

5. 유의사항

□ 신청 시, 유의사항

◆ 본 지원사업 신청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본 사업은 경상북도, 포항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, “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”, “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” 등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“**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**”에 따라 처벌(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) 을 받게 됩니다.
- ② 부정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신청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- 신청기관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와 관련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신청기관은 공고문, 매뉴얼,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

□ 선정 후, 유의사항

- 선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 또한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- 선정기업이 공고문, 매뉴얼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, 선정취소·참여제한·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된 이후, 중복지원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사업선정 취소·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(재)포항테크노파크는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사유가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으며,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(재)포항

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형태,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

※ 선정기업이 (재)포항테크노파크가 요청하는 사항에 있어,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
‘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’가 있을 수 있음.

- 선정기업은 **그린바이오기업 신고수리확인서를 제출**해야하며, 미제출시 선정취소가 될 수 있음
- 사업 수행 시, 사후 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**기업에서 부담**함
- 지원금 신청 시, 2026년 12월 급여 지급내역서는 고용 유지 협약서로 대체하며, 급여 지급 후 (재)포항테크노파크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※ 2026년 12월 급여분은 2027년 1월말까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, 미집행 및 초과 교부금액(지원금 수령)은 환수 예정
- 본 사업의 참여 및 지원금 지급은 **신규 채용자만 해당**이 되며, 기존인력은 지원 해당 없음

별첨 1 그린바이오 산업 및 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

농림축산식품부, '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' 일부 발췌 (2023.02.)

- ☐ (개념)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*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, 농업 및 전·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新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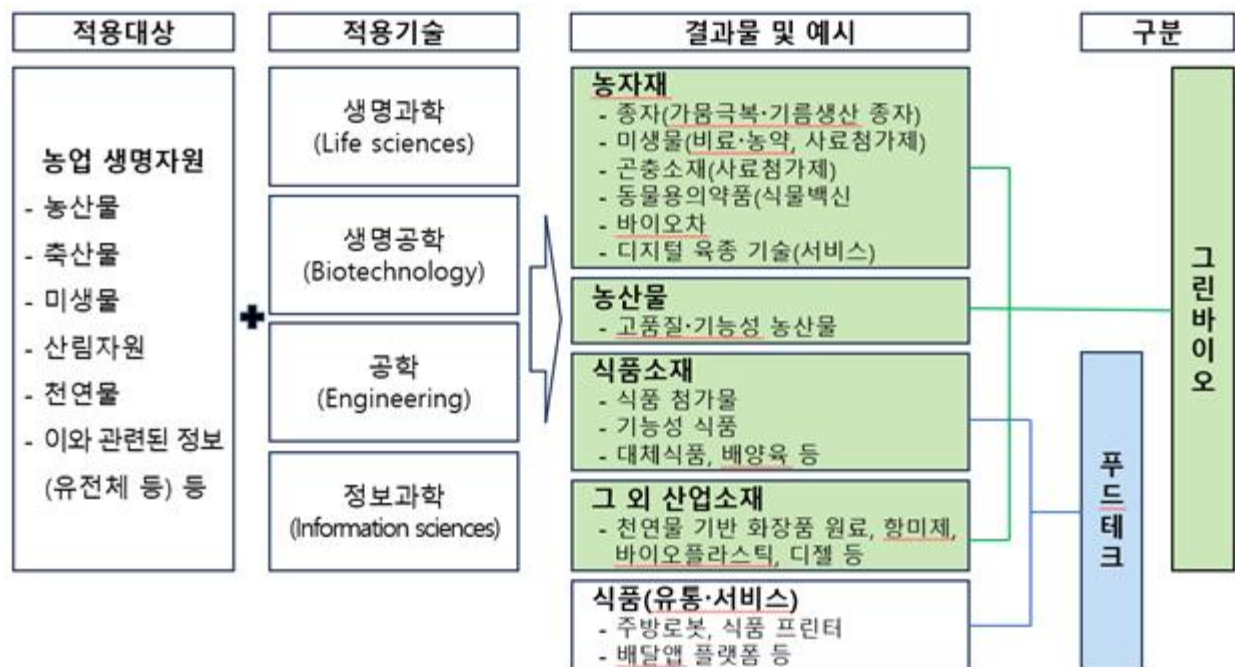
* 농축산물, 미생물, 천연물 및 이와 관련된 정보(유전체 등) 등



- (범위) ①농자재, ②기능성농산물, ③식품소재 및 ④그외 산업소재로 구분 가능
- 종자(디지털육종 기술 기반), 미생물 비료·농약·사료첨가제, 곤충소재, 동물용의약품(식물백신), 기능성·대체식품, 산업소재(천연물)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

(그린바이오 산업 6대 유망분야)

- 동물용의약품, 종자, 미생물, 곤충, 식품, 천연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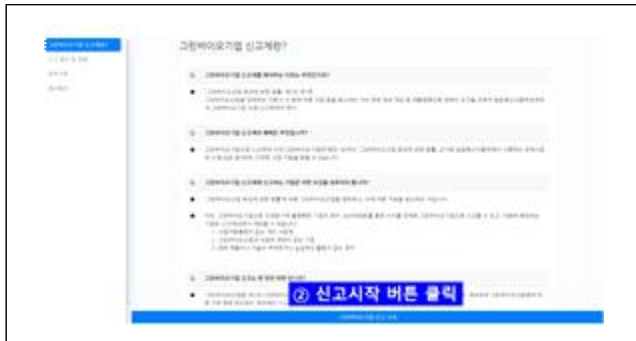


별첨 2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방법

1. www.koat.or.kr 접속 및 배너 클릭



2. 그린바이오기업 '신고' 시작



3. 기업체 정보 입력



4. 신고서 작성/업로드

